

2026년 『출향(전입)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청년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 5.
전 주 시 장

1. 공고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규모 : 10명
- 지원대상
 - 기 업 : 전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 외 추가로 청년을 채용하고 월 급여액을 최저임금이상 지급 가능한 기업
 - 청 년 : 18세~39세 전주시 전입 청년으로 참여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청년 자격요건>

- 가. 18~39세 청년
- 나. (출향) 과거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했던 자로 전북특별자치도 외 타시군구 최근 1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 다. (전입) 전북특별자치도 외 타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 전주시로 전입 의사가 있는 청년 중
- 다. 채용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주시 전입신고 가능한 청년
(단, 채용약정일 전 1년 이내 전주시로 전입신고 되어 있는 청년도 가능)
- 라. 사업 기간 동안 전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

- 지원내용
 - 기 업 : 청년 채용 1인당 월 10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 청 년 : 장려금 최대 900만원 지원(6·12·24개월 경과 시 각 300만원 지급)
- 추진일정 (세부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있을 수 있음)

참여기업·청년 공개모집	참여기업·청년 심사 및 확정	협약체결	사업추진
'26. 1. 5. ~ 1. 30.	'26. 2. 13. 한 (선정대상 개별통보 예정)	'26. 2. 27. 한	'26. 3월~

2. 신청자격

○ 참여기업 : 전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월 급여액을 최저임금 이상 지급 가능한 기업

- 비영리법인·단체도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

*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참여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함

<제외대상>

- 소비 향락업 등 업종
 -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 ②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속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출향청년 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출향청년 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 출향청년 취업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정부 및 시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기업
- 기타 출향청년 채용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청 년 : 18세~39세 전주시 전입 청년으로 참여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청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자격요건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계약직·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취업 중인 자로 봄
- ※ 보조금 지원 중 타 시·군으로 주소 이전 시 지원 중단

<제외대상>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비전문취업(F-9),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방문취업(H-2)은 가능
-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본인이 원하여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 ※ 다만, 청년이 원하여 해지된 경우라도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참여 할 수 있음
- 출향청년 채용 지원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청년취업채용 예정기업에서 근무한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취업자로 채용되었던 자
- 정부 및 시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동일 유형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자
- 휴학생, 재학생
 - ※ 다만,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최종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 야간학교 재학 중인 자는 참여 가능
- 기타 출향청년 채용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3. 지원한도

- 참여기업은 당해연도 출향청년 채용지원 협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의 40% 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상)에서 채용 가능
-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는 정부 등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불가(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 지원을 중단하며 향후 참여 자격 배제)
- 단, 본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고용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장려금 포기서약서 작성 시 참여 가능

4. 지원내용

- 정규직 채용 시 지원금 : 1인당 월 100만원 12개월 지원

5.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의무 고용이행상황 등

- 보조금 지급 방법
 - 기업이 취업자 임금을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고 월 단위로 익월

10일까지 신청하면 근무상황 등을 확인 후 지원금 지급(매월 신청)
(예시) 2026년 3월 급여지급분에 대하여 2026년 4월 10일 한 교부신청

- ※ 지원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퇴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불가
- ※ 4대 보험 체납 시 3개월 이내 완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중지

○ 보조금 지원기업 의무 고용 이행 상황

- 보조금 지원 기간 동안 ‘협약체결 직전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수 또는 협약체결 당시 상시 근로자수’(취업참여자 미포함)를 유지하고, 보조금 지원대상 신규고용인 유지
- 상기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가 있는 경우 3개월의 보완기간 부여 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해년도 지원중단
- ※ 인원유지 여부는 지원금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으로 확인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6. 1. 5.(월) 09:00 ~ 1. 30.(금) 18:00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 (방문접수) 점심시간(12:00~13:00) 제외, 기간 중 평일(9:00~18:00)
 - (등기우편) '26. 1. 30.(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처 : 전주시청 청년일자리과 청년내일팀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전주시청별관 9층)

<제출서류>

[필수]

1. 출향청년 채용지원 신청서(기업용) 1부
2. 확인서(기업용) 1부
3. 출향청년 취업지원 신청서(참여자용) 1부
4.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기업용, 개인용) 각 1부
5. 출향청년 채용 선발자 명단통보서(기업용) 1부
6. 출향청년 채용약정서 1부.
7. 표준근로계약서 1부.
8. 출향청년 채용지원 협약서 2부. (월, 일 미기재)
9. 사업자등록증 1부.
10.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1.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1부(신청일 직전 3개월 매월 말일 기준 각 1부, '26년 1월 말 기준 1부.)
12. 출향청년 취업자 주민등록초본 1부(과거주소이력 전체 포함)

[선택] 증빙서류 제출 시 가점 처리(1개 이상 항목 제출 가능)

1. 고용부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기업
2. 전년도 도·시군 취업박람회 참여기업
3. 전년도 고용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교육생 채용기업
4. 가족친화인증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 5.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우수기업 또는 모범 기업 등으로 수상한 기업
- 6. 직원복지 현황
 - 유연근무제, 육아휴직제,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운영 ☞ 복무규정, 사규 등
 - 성과급, 교통비(차량유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운영 ☞ 사규, 급여대장 등
 - 휴게공간 운영 ☞ 휴게공간 사진

7. 기타 유의사항

- 해당사업의 신청기업은 사전에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부정확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에 대한 일체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채용기업은 청년취업자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후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귀속함
- 청년취업자 채용기업은 전주시와 「출향청년 채용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함
- 청년취업자 채용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기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음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청년취업자를 채용코자 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청년취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부정 신청 또는 수급에 따른 청년취업 신규채용 금지기간 중 채용된 취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지급된 지원금은 반납·환수함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 >

- . 제40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41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8. 문의처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주시청 청년일자리과 청년내일팀 (☎ 063-281-87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